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약관

Hyundai Insurance



꼼꼼하고 든든한
도로 위의 매니저

하이카자동차보험



항상 저희 현대해상을 사랑해 주시는 계약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국내 최고의 손해보험회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 굴지의 보험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해상은 고객의 만족을 회사활동의 중심에 두고 가정에는 행복, 기업에는 번영을 제공하여 풍요로운 사회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지도와 사랑에 힘입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 현대해상화재보험

※ 본 약관내용중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특약에 한하여 보상받습니다.

품 질 보 증 제 도

1. 청약서상 자필서명

2. 청약서 부분전달

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을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시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가입 대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제2조(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제2편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6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보상하는 손해)

제9조(피보험자)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12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제14조(제출 서류)

제15조(가지급금의 지급)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16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18조(제출 서류)

제19조(가지급금의 지급)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20조(보험금의 분담)

제21조(보험회사의 대위)

제22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23조(합의 등의 협조 · 대행)

제24조(공탁금의 대출)

제4편 일반 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 제25조(보험계약의 성립)
- 제26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27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제28조(청약의 철회)
- 제29조(보험기간)
- 제30조(사고발생지역)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제31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32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제33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 제34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제35조(보험계약의 취소)
- 제36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제37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 제37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제38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제39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4장 그 밖의 사항

- 제40조(약관의 해석)
- 제41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정보의 제공)
- 제42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 제44조(보험사기행위 금지)
- 제45조(분쟁의 조정)
- 제46조(관할법원)
- 제47조(준용규정)

[별 표]

- <별표 1>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 <별표 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 <별표 3> 과실상계 등
-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p>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p> <p>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 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 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4) 부속기계장치 <p>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p>
<p><용어풀이></p> <p>(*)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p> <p>(*)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p> <p>(*)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p>	
6.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9. 기명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10.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 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1. 휴대품, <u>인명보호장구</u>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 ^(*) 를 말합니다. 다.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 ^(*) 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
<p><용어풀이></p> <p>(*)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 · 팬츠 · 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p> <p>(**)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p> <p>(***)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p>	
12.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14. 마약·약물 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의 3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이들 3가지 보장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

취급업자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보상
나.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

-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text{적용 보험료} = \frac{\text{기본 보험료}}{\times \text{할인·할증률}}$$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보험가입금액,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할인·할증률	자동차취급업자 손해율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특약별 상이)

제2편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는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재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무면허운전자가 절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이 멸실, 파손, 오손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나.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라. 피보험자의 고용주
 2.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3.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4.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6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6조(피보험자 개별적용)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10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boxed{\text{지급 보험금}} = \boxed{\text{'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④ 제1항의 「대물배상」의 경우 '공제액'은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보상하는 손해)

-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

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 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용어풀이>

- (*1)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2)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 (*3)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제9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재하여 운송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용어풀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 자동차의 제작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boxed{\text{지급 보험금}} = \boxed{\text{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boxed{\text{비 용}} - \boxed{\text{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입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용어풀이>

(*1)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자동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1)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4.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1)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1)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1)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멀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12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때
2.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13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 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14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1. 보험금 청구서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5.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
6.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제15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지급 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14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16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18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손해배상청구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제19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

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18조(제출 서류)에서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20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보험회사의 대위)

-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2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24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자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28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26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자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지 않은 경우
 -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27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분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청약의 철회)

- ① 일반금융소비자(*1)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2)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용어풀이>

-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2)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제30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31조(계약 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2.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자동차의 탁송대수, 판매 또는 전시실적, 회사 규모, 종사원의 수 등에 따라 보험료가 정하여지는 계약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
-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3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38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이 변동된 사실
 2.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자동차의 탁송대수, 판매 또는 전시실적, 회사 규모, 종사원의 수 등에 따라 보험료가 정하여지는 계약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자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사고발생 시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자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자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자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34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35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37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9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8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 월이 경과한 때
 -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

- 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3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회사가 제3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3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회사가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3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4.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9조(보험료의 환급 등)

-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26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37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37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제34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3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40조(약관의 해석)

-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① 보험회사는 제33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42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4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5조(분쟁의 조정)

-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46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47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가. 사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p>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p> <p>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p>
3. 상실 수익액	<p>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산식〉</p>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times (\text{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text{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div>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p>(가) 산정대상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인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p>(나) 산정방법</p> <p>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p> <p>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p> <p>가) 급여소득자</p> <p>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용어 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 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div> <p>나) 사업소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3. 상실 수익액

< 산식 >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
기여율 × 투자비율

-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 풀이>

-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p>3. 상실 수익액</p>	<p>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p> <p>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p> <p>(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p> <p>(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p> <p>(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p> <p>(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p> <p>(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p> <p>(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p>(6) 외국인</p> <p>(가) 유직자</p> <p>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p> <p>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생활비율: 1/3</p>									
<p>라. 취업가능월수</p>									
<p>(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p> <p>(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피해자의 나이</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취업가능월수</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62세부터 67세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36개월</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67세부터 76세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24개월</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76세 이상</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2개월</td></tr> </tbody> </table>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개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개월	76세 이상	12개월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개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개월								
76세 이상	12개월								
<p>(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p> <p>(5) 외국인</p>	<p>(가) 적법한 일시체류자⁽¹⁾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p> <p>(나) 적법한 취업활동자⁽²⁾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p>(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p>3. 상실 수익액</p>	<p><용어풀이></p> <p>(*)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p> <p>(*)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p> <p>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산식〉</p> $\frac{1}{1+i} + \frac{1}{1+2i} + \cdots + \frac{1}{1+ni}$ <p>i=5/12%, n=취업가능월수</p> </div>
-------------------------	--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임시운행허가기간 의무담보 특별약관」에서의 「대인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p>1. 적극손해 (2022년 12월31일 이전 사고에 적용)</p>	<p>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p> <p>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p> <p>(1) 입원료</p> <p>(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p> <p>(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p> <p>(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 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p> <p>(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p>1. 적극손해 (2023년 1월1일 이후 사고에 적용)</p>	<p>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p> <p>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p>

	<p>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p> <p>(1) 입원료</p> <p>(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p> <p>(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p> <p>(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 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p> <p>(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	---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r> </thead> <tbody> <tr> <td>1</td><td>200</td><td>5</td><td>75</td><td>9</td><td>25</td><td>13</td><td>15</td></tr> <tr> <td>2</td><td>176</td><td>6</td><td>50</td><td>10</td><td>20</td><td>14</td><td>15</td></tr> <tr> <td>3</td><td>152</td><td>7</td><td>40</td><td>11</td><td>20</td><td></td><td></td></tr> <tr> <td>4</td><td>128</td><td>8</td><td>30</td><td>12</td><td>15</td><td></td><td></td></tr> </tbody> </table>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p><용어 풀이></p> <p>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p>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5px;">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frac{85}{100}$</td> </tr> </table>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frac{85}{100}$	
	<p>나. 휴업일수의 산정</p> <p>(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p> <p>(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p>	

3. 휴업손해	<p>다. 수입감소액의 산정</p> <p>(1) 유직자</p> <p>(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p> <p>(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p> <p>(2) 가사종사자</p> <p>(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p> <p>(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하게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p> <p><용어 풀이></p> <p>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p> <p>(3) 무직자</p> <p>(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p> <p>(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p> <p>(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6) 외국인</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4. 간병비	<p>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p> <p>나. 인정 대상</p> <p>(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p> <p>(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p> <p>(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p> <p><용어 풀이></p> <p>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p> <p>다. 지급 기준</p> <p>(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p> <p>(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p> <p>(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p> <p>(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p>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 ~ 2급		60일
3급 ~ 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p>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p> <p>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p> <p>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p>
---------------	---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임시운행허가기간 의무담보 특별약관」에서의 「대인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위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p> <p>(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p> <p>(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text{원}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p> <p>(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text{원}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p> <p>(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p> <p>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text{원}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p> <p>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text{원}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p> <p>(*)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p> <p>(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p>	(단위: %, 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노동능력상실률</th> <th>인정액</th> </tr> </thead> <tbody> <tr> <td>45% 이상 50% 미만</td> <td>400</td> </tr> <tr> <td>35% 이상 45% 미만</td> <td>240</td> </tr> <tr> <td>27% 이상 35% 미만</td> <td>200</td> </tr> <tr> <td>20% 이상 27%미만</td> <td>160</td> </tr> <tr> <td>14% 이상 20% 미만</td> <td>120</td> </tr> <tr> <td>9% 이상 14% 미만</td> <td>100</td> </tr> <tr> <td>5% 이상 9% 미만</td> <td>80</td> </tr> <tr> <td>0 초과 5% 미만</td> <td>50</td> </tr> </tbody> </table>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p>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 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p>																			
2. 상실수익액	<p>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text{월평균현실소득액}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text{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p>																			

<p>2. 상실수익액</p>	<p>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p>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p>(가) 산정대상기간</p> <p>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p> <p>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p> <p>(나) 산정방법</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2) 가사종사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3) 무직자(학생포함)</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외국인</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다. 노동능력상실률</p> <p>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육내 또는 육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라. 노동능력상실기간</p> <p>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p> <p>마. 호프만 계수</p> <p>사망한 경우와 동일</p>
<p>3. 가정간호비</p>	<p>가. 인정 대상</p> <p>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p> <p>(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p> <p>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p> <p>(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p> <p>(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p> <p>(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p> <p>(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p> <p>(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p> <p>(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p>

	<p>(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p> <p>(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p> <p>(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다.</p> <p>(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p> <p>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이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p>
--	---

<별표 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항 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p>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¹⁾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p> <p>(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p> <p>(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²⁾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2)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p>
2. 교환가액	<p>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p> <p>(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p> <p>(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p>
3. 대 차 료	<p>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대차를 하는 경우</p> <p>(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p> <p>(*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p> <p>(*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 가격을 말합니다.</p> <p>(*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p> <p>(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농기계(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p> <p>(*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p> <p>(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p> <p>(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p> <p>(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p> <p>(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p>
4. 휴 차 료	<p>다. 인정기간</p> <p>(1) 수리 가능한 경우</p> <p>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p> <p>(*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p> <p>가. 지급대상</p> <p>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p> <p>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p> <p>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 가능한 경우</p>

	<p>(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p> <p>(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p>
5. 영업손실	<p>가. 지급대상</p> <p>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p> <p>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p> <p>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인정기간</p> <p>(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음.</p> <p>(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p>
6. 자동차사체 하락손해	<p>가. 지급대상</p> <p>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p> <p>(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p> <p>(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p>

<별표 3> 과실상계 등

항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2022년 12월31일 이전사고에 적용)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배상」(「임시운행허가기간 의무보험담보 특별약관」의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 「대인배상」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p> <p>(3) 「임시운행허가기간 의무보험담보 특별약관」의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p> <p>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p> <p>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p>
1. 과실상계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배상」(「임시운행허가기간 의무보험담보 특별약관」의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023년 1월 1일이후 사고에 적용)</p>	<p>(2) 「대인배상」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p> <p>(*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p> <p>(3) 「임시운행허가기간 의무보험담보 특별약관」의 「대인배상」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p> <p>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p> <p>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p>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p>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p> <p>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p>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급	3천만 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주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급	1,200 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p>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 절부 이단을 포함한다)</p> <p>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p> <p>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p> <p>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p> <p>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4급	1천만 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p> <p>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p> <p>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p> <p>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p> <p>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p> <p>8. 상완골 경부 골절</p> <p>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p> <p>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p> <p>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p> <p>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p> <p>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착관절 탈구를 포함한다)</p> <p>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p> <p>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p> <p>18. 골반화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p> <p>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p> <p>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p> <p>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p> <p>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5급	900 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p> <p>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치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p>

		<p>4. 안정성 추체 골절</p> <p>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p> <p>6. 상완골 간부 골절</p> <p>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p> <p>9. 요골 경상돌기 골절</p> <p>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p> <p>11. 수근 주상골 골절</p> <p>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p> <p>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p> <p>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p> <p>20. 슬개골 골절</p> <p>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p> <p>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p> <p>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p> <p>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6급	700 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p> <p>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p> <p>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p> <p>4. 심장 타박</p> <p>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p> <p>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p> <p>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p> <p>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p> <p>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p>

		<p>18. 요골 경부 골절</p> <p>19. 척골 주두부 골절</p> <p>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p> <p>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p> <p>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p> <p>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31. 19차 이상 22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7급	500만 원	<p>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p> <p>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p> <p>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p> <p>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p> <p>5. 쇄골 골절</p> <p>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p> <p>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p> <p>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p> <p>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p> <p>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p> <p>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p> <p>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p> <p>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p> <p>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p> <p>17. 다발성 중수골 골절</p> <p>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p> <p>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p> <p>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p> <p>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6. 16차 이상 18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8급	300 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p> <p>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p> <p>3. 외상성 시신경병증</p> <p>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5. 복합 고막 파열</p> <p>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삼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p> <p>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p> <p>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2. 중수골 골절</p> <p>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p> <p>14. 다발성 수지골 골절</p> <p>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p> <p>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p> <p>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9급	240 만원	<p>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p> <p>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5. 흉골 골절</p> <p>6. 추간판 탈출증</p> <p>7. 흉쇄관절 탈구</p> <p>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p> <p>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1. 수지관절 탈구</p> <p>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격렬골절 등 제불완전골절</p> <p>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p> <p>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10급	200만 원	<p>1. 3cm 이상 안면부 열상</p> <p>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p> <p>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p> <p>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 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 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칭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 용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이라 한다)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공통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두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마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증, 거미막 낭증,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뇌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 가능하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준용한다.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흉·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 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에 준용한다.
상·하지 공통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을 준용한다.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을 준용한다.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 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 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p>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p> <p>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p> <p>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p> <p>사지골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p> <p>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p> <p>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p>
상지	<p>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p> <p>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p> <p>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p> <p>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 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p> <p>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의미한다.</p>
하지	<p>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p> <p>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p> <p>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p> <p>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을 준용한다.</p> <p>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을 준용한다.</p> <p>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p> <p>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p> <p>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화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p> <p>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p> <p>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p> <p>골반화가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p>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 5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 3,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 2,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 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

		<p>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p> <p>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p> <p>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7급	6천만원	<p>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p> <p>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p> <p>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p> <p>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p> <p>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p> <p>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p>
8급	4,500만원	<p>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p> <p>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p> <p>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p> <p>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p> <p>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p> <p>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p> <p>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p>
9급	3,800만원	<p>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p> <p>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p> <p>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p> <p>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p> <p>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p> <p>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p>

9급	3,800만원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2급	1,900만원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함)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 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함)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의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麻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특별약관

- ① 탁송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
- ② 판매용자동차 특별약관
- ③ 정비수탁자동차 특별약관
- ④ 수출용 중고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 ⑤ 수탁자동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 ⑥ 탁송 · 판매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 ⑦ 임시운행허가기간 의무보험담보 특별약관
- ⑧ 대리운전자동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① 탁송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8조(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탁송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출고지에서 인수한 때부터 개시되고, 통상의 탁송과정을 거쳐 다음의 경우 중 먼저 발생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가 목적지의 수하주 또는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
 - ② 피보험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24시간이 경과한 때
- (2) 회사는 위 '(1)'의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정부보장사업 포함)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 (1) 이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대인배상」과「대물배상」제4조(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로서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2) 이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9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아래에 기재된 자동차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제작회사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하는 신조 및 중고자동차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외에 통상의 탁송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보험가액의 결정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출고가격을 50만원을 단위로 하여 50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하며,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고발생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으로 합니다.

6. 탁송차량현황의 통보

- (1)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15일까지의 탁송차량현황을 당월의 20일 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탁송차량현황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2) 회사가 위 '(1)'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의 정산

- (1)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차량탁송실적에 따라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시 및 매월 10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위 '(1)'의 월별 예납보험료를 이 특별약관 '5. 탁송차량현황 통보'에 따라 매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8. 보험계약의 해지

-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2) 위 '(1)'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6. 탁송차량현황의 통보'에 따라 통보를 하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통보되어 보험료가 정산된 탁송차량을 제외하고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7. 보험료의 정산'에서 규정하는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정산보험료 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당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9.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6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판매용자동차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함)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8조(보상하는 손해)는 판매용 신조자동차가 출고되어 보험기간 중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등록, 검사, 설비, 운반 등 통상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 (2) 회사는 위 「(1)」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정부보장사업 포함)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 (1) 이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로서 기명피보험자
 - ② 피보험자동차의 제작회사(해당 피보험자동차의 판매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자동차 판매업자 및 매수인
 - ③ 전 각 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2) 이 특별약관에서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 제9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외에 통상의 판매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보험가액의 결정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출고가격을 50 만원을 단위로 하여 50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합니다.

6.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6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다른 시각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③ 정비수탁자동차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함)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수리, 정비, 점검 또는 검사(이하 「정

비작업'이라 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정비작업의 과정(피보험자동차를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 (2) 회사는 위 '(1)'의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정부보장사업 포함)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3) 회사는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다른 계약(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이 보험계약 이외의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 지급가능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단,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범위 한도에서 청구포기 하는 경우를 말함. 또한,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람이 모두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한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 지급가능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그 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피보험자

- (1) 이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대인배상」과「대물배상」제4조(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로서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
 - ③ 위 '①' 및 '②'호 이외에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2) 이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9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는 제외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통상의 정비작업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 회사는 차량손해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수탁받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보험계약의 해지

-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2) 위 '(1)'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오후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다른 시각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함)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2) 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2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2)'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 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 (1) 이 특별약관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2)'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③ 배상책임 포괄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에 규정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대인배상 포괄담보

- (1) 회사는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다른 계약에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정부보장사업 포함)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정부보장사업 포함)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 이외에 피보험자가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정부보장사업 포함)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를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보고 다른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회사는 위 '(2)'의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한 금액만큼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드립니다.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받은 경우에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위 '(1)'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때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가 위 '(2)'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않는 때

4.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 ① 보통약관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 ② 이 추가특별약관 '3.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2)'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1)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다음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보통약관 <별표1>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2) 대물배상

이 추가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②'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도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④ 자동차판매직원 운행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판매직원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

- (1)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4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신조자동차판매회사 소속 자동차 판매직원을 말합니다.
- (2)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9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⑤ 자기신체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 다만, 이 보험계약 이외에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② 기명피보험자. 다만,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 ③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④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 ⑤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⑥ 위 '①' 내지 '⑤'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 ⑦ 위 '①' 내지 '⑥'에서 규정하는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⑧ 위 '①' 내지 '⑤'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고용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통상의 자동차 관리업무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⑥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⑦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⑧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점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점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1>'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점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 (1) 위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boxed{\text{지급보험금}} = \boxed{\text{실제손해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 ① 실제손해액은 보통약관 '<별표1~4>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써 보통약관 <별표 3>의 1.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②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④ 다만, ③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별표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00만원
5급	500만원	12급	60만원
6급	400만원	13급	40만원
7급	250만원	14급	2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별표2>**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⑥ 차량손해 렌트비용담보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를 이 추가특별 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직접손해

2.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렌트비용담보

3. 보상하는 손해

- (1)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직접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렌트비용 보험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회사가 지급하는 「렌트비용 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정기준액

가. 대차를 하는 경우

- (ㄱ)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 가능

(ㄴ)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나.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ㄱ)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ㄴ)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② 인정기간

가.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다.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30일. 단,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3) 회사가 '렌트비용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 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직접손해' 보험금 지급 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4.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④ 수출용 중고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함)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다음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최초 매수차량의 경우에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때부터 통상의 운송

과정을 거쳐 매집장소 또는 선적지 중 먼저 도착한 때까지

- ② 이미 매수되어 매집장소에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매집장소에서 출발한 때부터 통상의 운송과정을 거쳐 다른 매집장소 또는 선적지중 먼저 도착한 때까지
-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매집장소에 도착하여 24시간 이내에 다른 매집장소 또는 선적지로 출발한 경우에는, 다른 매집장소 또는 선적지중 먼저 도착한 때까지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매집장소라 함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자가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이후 수출을 위해 차량을 선적하기 이전까지 중고자동차를 정비 또는 보관하는 곳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

- (1) 이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로서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2) 이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9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매수한 중고자동차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통상의 운송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동차가 수리, 정비, 점검 또는 검사 등의 정비작업을 위해 입고된 때부터 정비작업이 완료되어 출고되는 때까지 발생한 손해(수리 또는 정비 후의 시험운행을 포함)

5. 보험가액의 결정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가액은 사고발생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으로 합니다.

6. 운송차량 현황의 통보

- (1)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15일 까지의 운송차량 현황을 당월의 20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운송차량 현황을 익일 5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2) 위 '(1)'의 운송차량 현황은 최초 매수하여 목적지로 운송된 차량과 기 매수하여 보관중인 장소에서 다른 목적지로 운송된 차량의 각각의 명세를 말합니다.
- (3) 회사가 위 '(1)'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의 정산

- (1)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차량운송실적에 따라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 시 및 매월 10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위 '(1)'의 월별 예납보험료를 이 특별약관 '6. 운송차량현황의 통보'에 따라 매 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8. 보험계약의 해지

-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2) 위 '(1)'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6. 운송차량현황의 통보'에 따라 통보를 하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통보되어 보험료가 정산된 차량을 제외하고는 해지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7. 보험료의 정산'에서 규정하는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정산보험료 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당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9. 보험기간

회사의 보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6시에 개시되어 마지막 날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⑤ 수탁자동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함)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래에 기재된 업무(이하 '자동차 취급업무'라 함)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수탁 받은 때부터 통상의 자동차 취급업무 과정(피보험자동차의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한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 ① 검사용역대행업자의 검사대행 업무
 - ② 등록 또는 폐차용역대행업자의 등록 또는 폐차대행 업무
 - ③ 자동차관리사의 통상의 자동차 관리 업무
 - ④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 소유 차량을 업무로서 수탁 받아 수행하는 제반 업무(운전대행업자의 대리운전업무 및 정비업체의 정비업무는 제외). 다만, 수탁 받아 관리중인 자동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한합니다.

- (2) 회사는 위 '(1)'의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정부보장사업 포함)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3) 회사는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다른 계약 (피보험자자동차가 가입한 이 보험계약 이외의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 지급가능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단,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범위 한도에서 청구포기 하는 경우를 말함. 또한,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람이 모두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한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 지급가능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그 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피보험자

- (1) 이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 (2) 이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9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3. 피보험자동차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관리업무를 위하여 수탁 받아 관리중인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② 위 '1.보상하는 손해 (1)'의 ①, ②의 경우 이륜차 및 건설기계를 제외한 자동차
- ③ 위 '1.보상하는 손해 (1)'의 ③, ④의 경우 승용자동차, 경·3종 승합자동차,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통상의 자동차 관리업무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이 특별약관 '2. 피보험자'에서 정한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자동차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5. 보험계약의 해지

- (1)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2) 위 '(1)'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기간

회사의 보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자기신체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 다만, 이 보험계약 이외에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② 기명피보험자. 다만,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 ③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④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 ⑤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⑥ 위 '①' 내지 '⑤'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 ⑦ 위 '①' 내지 '⑥'에서 규정하는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⑧ 위 '①' 내지 '⑤'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고용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통상의 자동차 관리업무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⑥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⑦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⑧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1>'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별표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 (1) 위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 ① 실제손해액은 보통약관 '<별표1~4>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 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써 보통약관 <별표 3>의 1.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②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대인배상」(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 배상」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④ 다만, ③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2)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별표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00만원
5급	500만원	12급	60만원
6급	400만원	13급	40만원
7급	250만원	14급	2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별표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②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함)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 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2) 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2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2)'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 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 (1) 이 특별약관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2)'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③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④ 자기차량손해 차대차 충돌 한정손해담보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제8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한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한 타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당시 운전자 및 소유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타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⑤ 보험료 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납입

-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함)로 합니다.

- (3) 위 '(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 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 보험료가 이체납입 되지 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 (1)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부터 <별표>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위 '(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2조(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 (4)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보험계약의 부활

- (1) 이 특별약관 '3.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의 (4)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2) 위 '(1)'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계약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 납입방법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비연속 2회납					1개월				
연 속 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10회납	1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⑥ 탁송·판매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함)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동차가 출고지로 입고된 때부터 개시되고, 운반, 설비, 등록 등 통상의 출고, 탁송 및 판매 과정을 거쳐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출고지라 함은 출고센터, 출하사무소 등 피보험자동차가 탁송되는 장소를 말하며, 피보험자동차가 중고자동차인 경우 차량을 인수하는 곳을 말합니다. (자동차 제작 공장, 공장 내 출고·배송센터 등 자동차 제작 공장의 지배범위에 있는 곳은 출고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매수인이라 함은 매수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 매수인, 피보험자동차가 중고자동차인 경우에는 목적지, 리스자동차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대여업자와 그 리스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계약체결을 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가 신조자동차인 경우 위 '(1)'의 '통상의 출고, 탁송 및 판매과정'에는 매매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동차를 보관중인 경우 및 전시용 차량의 전시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가 중고자동차인 경우 위 '(1)'의 '통상의 출고, 탁송 및 판매과정'에는 피보험자동차가 목적지에서 보관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4) 회사는 위 '(1)'의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정부보장사업 포함)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5) 회사는 위 '(1)'의 손해 중 출고지 내에서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타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

- (1) 이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대인배상」과「대물배상」제4조(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 ② 피보험자동차의 제작회사 또는 판매회사. 단, 피보험자동차가 중고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해당 피보험자동차의 판매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매수인의 의뢰를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탁송(운반)하는 자
 - ④ 전 각 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2) 이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9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통상의 탁송 및 판매 과정에 있는 신조 및 중고자동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통상의 출고, 탁송 및 판매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출고지 상·하차 과정 및 출고지 내에서 발생한 피보험자동차 점검, 정비 중 발생한 손해

5. 탁송 · 판매차량 현황의 통보

-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탁송 · 판매 차량의 현황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2) 회사가 위 '(1)'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 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6. 보험료의 정산

- (1)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탁송 · 판매차량 실적에 따라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 시 및 매월 10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위 '(1)'의 월별 예납보험료를 이 특별약관 '5. 탁송 · 판매차량 현황의 통보'에 따라 매 익월 25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7. 보험계약의 해지

-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2) 위 '(1)'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5. 탁송 · 판매차량 현황의 통보'에 따라 통보를 하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통보되어 보험료가 정산된 탁송차량을 제외하고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6. 보험료의 정산'에서 규정하는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정산보험료 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당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8.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자기신체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 다만, 이 보험계약 이외에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② 기명피보험자. 다만,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 ③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④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 ⑤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⑥ 위 ‘①’ 내지 ‘⑤’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 ⑦ 위 ‘①’ 내지 ‘⑥’에서 규정하는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⑧ 위 ‘①’ 내지 ‘⑤’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고용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통상의 탁송 및 판매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⑥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⑦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⑧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⑨ 피보험자가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 (1) 위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boxed{\text{지급보험금}} = \boxed{\text{실제손해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 ① 실제손해액은 보통약관 <별표1~4>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 민국 법원의 확정판결^(*)1) 등에 따른 금액으로써 보통약관 <별표 3>의 1.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②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 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④ 다만, '③'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2)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별표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급	8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3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4급	7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5급	500만원	1,000만원	1,650만원
6급	4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7급	250만원	500만원	800만원
8급	180만원	360만원	600만원
9급	140만원	280만원	450만원
10급	120만원	240만원	400만원
11급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2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13급	40만원	80만원	150만원
14급	20만원	40만원	6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별표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③ 수리후 탁송자동차 운행담보 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수리후 탁송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수리후 탁송자동차라 함은 신규로 출고되어 매수인에게 인도가 완료된 이후 사고, 고장 또는 하자 등의 이유로 정비공장에서 수리완료 후 소유자에게 인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수탁 받아 탁송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회사가 보상할 탁송·판매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 '1.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자에게 인도를 위해 정비공장 등으로부터 수탁 받은 때부터 개시되고 통상의 탁송과정을 거쳐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소유자의 지위에 준하는 자를 포함)에게 인도된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3. 보험계약 종복시의 우선보상

보통약관 제20조(보험금의 분담) 및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의 '(4)'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리가 있는 자(손해배상청구권자 및 다른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등을 말함)가 다른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에 따라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다른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에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추가특별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지원담보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신조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생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보통약관(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의 자동차시세 하락 손해 및 이와 유사한 담보의 보상액)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물배상에 의해 손해 배상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 임시운행허가기간 의무보험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서 「대인배상」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함)에 의한 「책임보험」을 말하며,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은 「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말합니다.

의무보험(대인배상·대물배상)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이하 「운행허가」라 함)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허가기간이 4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함)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손해는 운행허가기간(운행허가를 받을 당시 정해진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 동안에 발생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가 매매된 경우 매수인(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
-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이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① 내지 ③ 이외의 다른 자동차취급업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5) 기명피보험자 또는 매수인의 의뢰를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탁송(운반)하는 자
- (6) 위 「(1)」 내지 「(4)」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이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① 내지 ③ 이외의 다른 자동차취급업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매매된 피보험자동차가 매수인 명의로 유효한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가 매수인에게 인도가 완료되기 이전으로서 다음의 자가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의 제작회사 및 판매회사(해당 피보험자동차의 판매사원을 포함)

- ② 위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또는 매수인의 의뢰를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탁송(운반)하는 자
 - ③ 위 '①' 내지 '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2) 「대인배상」의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한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② 회사는 위 '①'의 고의로 인한 손해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3) 대물배상의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3항 이외에 위 '(1)'의 ① 내지 ③을 제외한 다른 자동차 취급업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보상의 한도와 범위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 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③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다.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④ '공제액'은 대물배상의 경우로서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6.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1)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나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

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① 「대인배상 I」 : 1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원, 마약·약물운전 1,000만원, 무면허운전 3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300만원
 - ② 「대물배상」 :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원, 마약·약물운전 500만원, 무면허운전 1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100만원
- (2) 피보험자는 자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1) 보통약관 제37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및 제38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8. 보험계약 증복시의 우선보상

-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이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및 '(2)'의 규정에 따릅니다.
- (3) 위 '(1)'의 경우 보통약관 제20조(보험금의 분담)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9. 보험기간

- (1)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영수한 때가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영수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 날 0시부터 회사의 보험책임이 시작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전차량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3. 대상차량 현황의 통보'에 따라 통보하는 전차량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3. 대상차량 현황의 통보

-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대상차량 현황을 회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 (2) 회사가 위 '(1)'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보험료의 정산

- (1)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대상차량 실적에 따라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 시 및 매월 10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위 '(1)'의 월별 예납보험료를 이 추가특별약관 '3. 대상차량 현황의 통보'에 따라 매 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1)'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위 '(2)'의 정산보험료 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보험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당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5) 위 '(1)' 내지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보험료는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피보험자동차별 개별적용

회사는 임시운행허가기간 의무보험담보 특별약관의 '2. 보상하는 손해', '3. 피보험자' 및 '8. 보험계약 중복시의 우선보상' 규정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 대리운전자동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함)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한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 용어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자(보험증권에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자)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차량을 수탁받아 운전케 한 후,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의 금액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단,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탁송'이라 함은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여 차량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 (2) 회사는 위 '(1)'의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정부보장사업 포함)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 (1) 이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 ③ 위 '①' 및 '②'의 피보험자 중 자동차정비, 주차, 급유, 세차, 자동차판매, 자동차탁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9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3.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기간 중 이 특별약관 '2. 피보험자' (1)의 '②' 운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자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가 대리운전 업무를 위하여 수탁 받아 관리중인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① 승용자동차
- ② 경·3종 승합자동차
- ③ 1.4톤이하 화물자동차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이 특별약관 '2. 피보험자'에서 정한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④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6. 보험계약의 해지

- (1)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2) 위 '(1)'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7. 보험기간

회사의 보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자기신체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다만,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⑤ 위 '①' 내지 '⑤'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 ⑥ 위 '①' 내지 '⑥'에서 규정하는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⑦ 위 '①' 내지 '⑤'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고용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통상의 자동차 관리업무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⑥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⑦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⑧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1>'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별표2〉‘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 (1) 위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boxed{\text{지급보험금}} = \boxed{\text{실제손해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 ① 실제손해액은 보통약관 ‘〈별표1~4〉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 민국 법원의 확정판결^(*)1) 등에 따른 금액으로써 보통약관 <별표 3>의 1.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②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④ 다만, ③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2)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6. 준용규정

-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별표1>**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00만원
5급	500만원	12급	60만원
6급	400만원	13급	40만원
7급	250만원	14급	2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별표2>**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②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함)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2) 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납입최

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2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2)'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 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 (1) 이 특별약관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2)'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③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④ 자기차량손해 차대차 충돌 한정손해담보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한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한 타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당시 운전자 및 소유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타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⑤ 보험료 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납입

-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함)로 합니다.
- (3) 위 「(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 (1)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부터〈별표〉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위 '(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2조(계약 후 알릴의무) 규정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 (4)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보험계약의 부활

- (1) 이 추가특별약관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의 (4)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 납입방법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비연속 2회납						1개월				
연 속 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10회납	1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⑥ 탁송중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및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취급업자 또는 차주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탁송(대리주차 포함)을 의뢰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자동차취급업자 또는 차주가 요청한 장소로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특별약관 '2. 피보험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탁송(대리주차 포함)을 의뢰받아 수탁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통상의 탁승(대리주차 포함)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 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및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하거나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한 내용에 대해 통보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588-5656 • 홈페이지 : www.hi.co.kr

• 서면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화재보험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담당자 앞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등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588-5656 • 홈페이지 : www.hi.co.kr

• 서면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화재보험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담당자 앞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588-5656 • 홈페이지 : www.hi.co.kr

• 서면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화재보험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담당자 앞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1000 www.allcredit.co.kr

• 한국신용정보(주) 1588-2486 www.mycredit.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 02-3771-1000 www.creditbank.co.kr

(3)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규정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

대한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02-3701-801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실무담당자: 02-3701-8923)

02-3702-8679

서울 종로구 5길 68
코리안리빌딩 6층

02-3145-51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 편리한 보험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계약조회/변경



보험계약대출



증명서 발급



사고접수

- 홈페이지 <http://www.hi.co.kr>
- 콜 센 터 1588-5656
- 스마트폰

QR코드 스캔>
스마트 고객센터 다운로드



H 현대해상

* 본 약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우리회사 정포나 고객 콜센터(1588-5656)로 연락 주십시오.



고객만족경영대상
명예의 전당 협회



글로벌고객만족경영대상
명예의 전당 협회



2019 글로벌고객만족도조사
자동차보험 하이라이트 1위
장기보험 하이라이트 1위
현대해상다이렉트 1위



2019 지속가능성지수
손해보험 부문 1위



2020 글로벌브랜드영향지수
자동차보험 하이라이트 1위
장기보험 하이라이트 1위
현대해상다이렉트 1위



2020 우수콜센터 인증

H 현대해상화재보험

03183 서울시

163

대표전화 : 1588-5656 | www.hi.co.kr

자동차상품파트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21962호
(유효일자 2022.06.21~2023.06.20)